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6월 1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월 14일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6. 14.(월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이승헌 과장(044-203-4080)	담 당 자	유은 서기관(044-203-4082)

금년 9월 '첨단투자지구 제도' 시행으로,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

- 6.15일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개정법률안 공포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'21.5.21(금) 국회를 통과한 **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**이 오늘(6.15) **공포**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법 개정은 세계적 **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** 등에 **선제적·공세적으로 대응**하기 위하여, **첨단투자 촉진을 목적**으로 추진된 것으로,

○ **'첨단투자지구' 제도를 신설**하고, 지구에 입주하는 **국내외 첨단투자기업·연구기관 등을 지원**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**주요 개정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○ **(첨단투자 정의)** 「산업발전법」 상 **첨단기술·제품**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**신성장·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**로 정의

⇨ **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**에 대하여 **업종 제한 없이** 첨단투자로 인정 가능하여, **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**에 기여

○ **(첨단투자지구 지정)** ①**기존 계획입지**(산업단지, 경자구역 등)의 일부, ②대규모 **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** 가능

* 지정절차 : (신청)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 → (심의)첨단투자지구위원회 → (지정고시) 산업부장관

⇨ **이미 개발된 계획입지**를 활용하여 **기업의 투자·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**함으로써, **첨단산업 협력단지를 효과적으로 육성**

○ **(지원)** 첨단투자지구 내 **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**에 대하여, 첨단투자를 위한 **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** 근거 규정* 신설

* 보조금 지원, 세제지원, 부담금 감면, 임대료 감면, 토지이용특례, 규제개선 신청 등

⇨ 재정지원, 입지지원, 규제개선 등 첨단투자 관련 **통합적 지원을 제도화**하여, 기업의 **투자 부담을 완화**하고 **첨단투자를 촉진**

□ 이번에 개정·공포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**9.16일부터 시행될 예정**이다.

○ 산업부는 **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·개정**하고, **세부 지원·운영 방안 등을 포함**한 **'(가칭)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'을 연내 수립**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**제도의 현장 안착**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하여, **6월 중 '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'을 발표**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, **'첨단산업의 세계공장'으로의 도약을 추진**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유은 서기관(☎ 044-203-40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